

「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10월 8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0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10월 18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유동근)

가. 제안이유

- 법제처에서 선정한 「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」 중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정비대상(5개 유형)

- 1)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
- 2) 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 미반영
- 3) 공유재산·계약 분야
- 4) 지방보조금 분야
- 5) 가산금·과태료·지방세 분야

⇒ 조례 소관부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8개 조례 개정안 확정

○ 개정 세부내용

1)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

-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신청제한 규정 삭제(안 제21조제4항)
-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5 개정으로 ‘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 된 자료 보관의무’와 ‘보관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’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조사업 운영의 적법성 강화(안 제20조제5항)
-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‘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’의 불명확한 보조금 취소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 운영 도모(안 제26조제1항)

2) 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는 3년 이내로 단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(안 제9조제1항)
- 상위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 번만 갱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갱신 시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토록 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는 횟수제한이나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적법성 제고(안 제9조제2항)

3) 「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-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으로 사서자격증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여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,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(안 제11조제2항)

- 작은도서관 운영자에게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완화(안 제12조제1항)

4) 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

- 「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수의직공무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시·군의 경우 의료업무수당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상한을 확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의직공무원의 원활한 충원 도모(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3)

5) 「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」의 개정

- 상위법령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위임 없는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완화(안 제15조)

6) 「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

-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제2항 각 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 증진(안 제12조제1항)

7) 「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」의 개정

- 상위법령인 「지하수법」에서는 가산금 부과 규정만 있으나 조례에서는 증가산금 부과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해소(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)
- 2016. 5. 27일 조례 내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태료 관련 규정과 별표를 모두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방지(안 제27조)

8) 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」의 개정

-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가 아닌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야 하므로 과태료 용어를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방지(안 제4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선정한 「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」 중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등의 사유로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개정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 정비, 근거법령의 제·개정에 따른 조문 반영, 상위 법령과 조례 간 불일치하는 기준 정비 등의 사항을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8개 조례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,
-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 1부.

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계산서: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
2. 증거서류: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
3. 첨부서류: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제21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26조 제목“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”을“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“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”을“위반한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지역 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확보하여야 한다”를 “확보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”을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”을 “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”을 “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제4조(「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지방공무

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호”를 “제2호가목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·축산물의 검역업무와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(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)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.

제3조 후단 중 “별표 3과”를 “별표 4와”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종전의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.

제5조(「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, 군수는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”를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제28조 중 “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·징수”를 “부담금의 부과·징수”로, “영제44조 및 지방세부과·징수”를 “지방세 부과·징수”로 한다.

별표 2 내지 별표 6을 삭제한다.

제7조(「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8조(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 중 “요금, 수수료, 과태료,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”을 “요금, 수수료,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**별표 개정안(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)**

[별표 2]

임기제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(제2조제1항 관련)

근무년수별 \ 등급별	가 급	나 급
5년 이상	월 1,312,000원 이하	월 973,000원 이하
4년 이상	월 1,306,000원 이하	월 967,000원 이하
3년 이상	월 1,300,000원 이하	월 961,000원 이하
2년 이상	월 1,295,000원 이하	월 956,000원 이하
2년 미만	월 1,289,000원 이하	월 950,000원 이하

- ※ 비고 : 1.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.
 2. 등급(가, 나) 구분 : 「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」 제3조 별표 1

[별표 3]

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(제2조제2항 관련)

지급 대상	지급액
가축·동물·축산물의 방역·검역·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(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)	월 500,000원

[별표 4]

장려수당 지급 구분표(제3조 관련)

지급 대상	지급액
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·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70,000원
② 분뇨·하수·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 240,000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□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0조(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⑥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계산서: 지방보조사업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</u> <u>2. 증거서류: 제1호의 계산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</u> <u>3. 첨부서류: 제1호의 계산서 또는 제2호의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</u>
<p>제21조(실적보고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21조(실적보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26조(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</p>	<p>제26조(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</p>

□ **평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</u>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</u>」과 같은 <u>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<u>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(이하"법"이라 한다)</u>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·개방화장실·이동화장실·유료화장실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「<u>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설치기준) ①<u>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(이하"령"이라 한다)</u>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5조(설치기준) ① <u>법 시행령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</p>	<p>제12조(개방화장실의 지정) ①-- ----- ----- -----</p>

<p>정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. 단,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3조제2항 각호의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□ **평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**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「의료법」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의료업무 등의 수당) ① -- ----- ----- -- 제2호가목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영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라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</p>

<p>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.</p>	<p>후 위탁기간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----- 5년----- -----.</p>
--	---

□ **평창군 지하수 관리 조례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가산금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(이하 “증가산금”이라 한다)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</u></p> <p>③ <u>제2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</p>	<p>제19조(가산금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④ -----</p>

<p>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<u>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27조(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)</u> <u>군수는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8조(준용) 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44조 및 지방세 부과·징수의 예를 준용한다.</u></p>	<p>----- ----- <u>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</u> 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제28조(준용) <u>부담금의 부과·징수</u> ----- ----- ----- <u>지방세 부과·징수</u> ----- ----- -.</p>
---	--

□ **평창군 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**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15조(가산금과 증가산금) ①사</u> <u>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100분에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</u></p> <p><u>②납부기한 경과후 90일 내에</u></p>	<p><u><삭 제></u></p>

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③납부기한 경과후 180일 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한다.

④제2항과 제3항의 가산금은 체납액이 2,5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□ **평창군 수도급수 조례**

현행	개정안
<p>제45조(지방세 징수의 준용) 이 조례에 따른 <u>요금, 수수료, 과태료,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</u>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</p>	<p>제45조(지방세 징수의 준용) ----- ----- <u>요금, 수수료,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